

#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.

발의자 : 장제원 · 여상규 · 김경진  
원유철 · 이채익 · 김영우  
김현아 · 박덕흠 · 박성중  
유재중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29조제2항·제3항,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**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**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3항제6호,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각각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. 1. ~ 3. (생 략) 4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. ~ 10. (생 략)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또는 「광산안전법」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·화약류관리보안	제29조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5. ~ 10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(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.</p>	
<p>1. ~ 5. (생략)</p>	
<p>6. 「<u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</p>	
<p>7. ~ 9. (생략)</p>	
<p>④ · ⑤ (생략)</p>	
<p>제30조(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) ① (생략)</p>	
<p>② 「<u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</p>	

